

3.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4,663號 1995. 6. 14
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호 중 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(시장을 제외한다)용 토지”를 “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”로 한다.

제10조 제7호 · 제9호 및 제12호 중 “1.1 을”을 각각 “1.5를”로 한다.

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 중 “3년”을 “4년”으로 한다.

제27조의3 중 “처분한 택지”를 “처분한 택지(이용 · 개발의무기간중에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 용 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를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1중 공장용외의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장용 외의 건 축물	◦ 건축물(건물의 지하층을 제외한다)의 건축면적(구축물의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별표 3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.2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
----------------------	--

별표 1의 비고한 제1호 중 “건설부령”을 “건설교통부령”으로 하고, 비고란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비고란 제5호 중 “당해 건축물의”를 “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을”로 한다.

별표 3의 1.주택이 있는 경우의 택지의 범위란 중 “-주택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”을 “-주택의 건축면적에 부표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.2를 곱한 면적 중

큰 면적”으로 한다.

부 칙

별표 3의 부표중 용도지역란의 제2호 내
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상업지역 · 준주거지역
 3. 공업지역 · 일반주거지역
 4. 녹지지역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.

②(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초과소유부담금부터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◇

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택지취득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◆주요골자◆

- 가. 이제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중 시장용지는 나대지에 포함시켰으나 시장용지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사실상 이용·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시장용지도 나대지에서 제외함(영 제3조 제3호).

나. 위험물취급사업자·자동차운수사업자 및 건설기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할 수 있는 택지의 범위를 관계법령에 규정된 기준면적의 1.1배로 하던 것을 기준면적의 1.5배로 확대함(영 제10조 제7호·제9호 및 제12호)

다. 주택건설분양용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을 사업준비 및 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, 분양에 따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취득후 3년에서 취득후 4년으로 1년 연장함(영 제18조 제2항 제1호).

라. 이용·개발의무기간중에 택지가 공익사업·공공사업용 토지에 편입됨에 따라 이용·개발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처분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(영 제27조의3).

마. 주택 또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산정방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·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과 일치시켜 건축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의 1.2배를 용적율로 나눈 면적중 큰 면적을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으로 함(영 별표 1 및 별표 3). 〈법제처 제공〉

참고자료

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내용

I. 추진배경

-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나
 - 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다소 현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고
 - 토지초과이득세법, 지방세법 및 법인세법 등 다른 세법의 기준과 서로 달라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.
- ※ 지난해말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세법간 판정기준을 일치시킨 바 있으며, '95.3.30 법인세법시행규칙도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이와 일치 시킨바 있음.
- 택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을 당하여 이용·개발을 못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민원내용을 반영키 위함.

II. 주요 개정내용

1. 법령간 토지취득규제 판정기준 일원화

가.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의 일원화(별표 1)

〈현황〉

- 건축물부속토지중 일정기준면적까지는 법 적용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

-법인소유 건축물(창고용 건축물 포함)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:

· [건축물의 건축면적 × 용도지역별 배율]과 [건축연면적 ÷ 용적율 × 5배]중 적은 면적

※용도지역별 배율:상업지역 3배, 주거·공업지역 4배, 주거전용 5배

〈문제점〉

◦ 기준면적 산정방법이 토지초과이득세법(유 휴 토지 판정기준), 지방세법(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) 및 법인세법(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)의 기준과 서로 상이하여 기업의 의사 결정상의 혼란 야기

- 특히 창고용 건축물은 고충화를 유도할 수 없어 대부분 나대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어 물류시설 보관에 애로사항으로 작용

〈개선방안〉

◦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산정방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('94.12 시행령 개정), 지방세법 ('94.12 시행령 개정) 및 법인세법('95.3 시행규칙 개정)과 일치
-[건축면적 × 용도지역별 배율]과 [건축연면적 ÷ 용적율 × 1.2배]중 큰 면적

나. 택지취득허가 기준면적의 합리화(제10조 제7호, 제9호, 제12호)

〈현황〉

◦ 자동차운수사업자, 건설기계사업자 및 위험물취급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코자 할 때에는 일정기준면적까지만 허용

구 분	택지취득허가 기준면적	비 고
자동차운수사업용 차고지	[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최저보유차고기준면적] × 1.1배	최저보유차고기준면적 : 대형 1대당 36m ² , 소형 13m ²
건설기계 대여사업용 주기장 용지	[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주기장 기준면적] × 1.1배	주기장 기준면적 : 24m ² × (건설기계 대수)
석유·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·보관 또는 판매사업용지	[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령 또는 조례상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] × 1.1배	서울시 가스충전소 기준면적 : 용기충전소 3천m ² , 자동차충전소 1천m ²

〈문제점〉

- 택지취득허가 기준면적이 토지초과이득세법, 지방세법과 서로 상이하여 민원야기
 -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진입로, 회전반경등을 감안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건설기계사업자 및 위험물취급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 토지취득기준이 다소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.

〈개선방안〉

- 토지초과이득세법('94.12 시행령 개정) 및 지방세법('94.12 시행령 개정) 및 법인세법('95.3 시행규칙 개정)과 일치
 - 기준면적의 1.1배를 1.5배로 확대

2. 주택건설분양용 택지의 처분의무기간 연장(제18조 제2항 제1호)

〈현황〉

- 주택건설분양용 택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처분하여야 부담금 부과 제외.
 - 다만, 경기 침체시 시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 1년 연장 가능

〈문제점〉

-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처분이 되지 않아 미분양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주택업자의 부담 가중
 - ※ '94년도 약 54억 원 부과
- 공동주택분양사업의 경우 토지매입, 설계, 사업승인준비기간등 사업준비기간과, 건축공사기간(20층의 경우 법정공기 기간 약 35개월) 및 입주기간을 감안할 때 3년내에 처분의무는 부적합

〈개선방안〉

- 처분의무기간(부과유예기간)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
 - 경기침체시 연장가능기간은 현행대로(1년) 유지
-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('94.12)과 법인세법시행규칙('95.3)도 2년내 착공하면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던 것을 3년내 착공하면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음.

3. 정당한 사유로 이용·개발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 면제(제27조의3)

<현황>

- 처분 또는 이용·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, 이용·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 부담금 부과
 - 공익사업등에 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당해 택지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 부담금 부과

<문제점>

- 허가받아 취득한 택지를 이용·개발의무기간내에 택지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을 당하여 부득이 처분(양도)하게 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

<개선방안>

-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처분하게 되는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

4. 나대지의 범위 조정(제3조 제3호)

<현황>

-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는 나대지에서 제외하여 법적용 대상인 택지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
 -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중 시장용지만은 나대지에 포함

<문제점>

- 최근 대법원에서 시장용지로 지정·제공하기로 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·변경되지 않는 한 시장건물 아닌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(대법원 1994.10.14, 선고 94누3773)

<개선방안>

-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용 토지도 나대지에서 제외